

개정 전	개정 후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보험료</u></p> <p>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 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

■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>

개정 전	개정 후
<u><신 설></u>	<p>제9조의2(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)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”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.</p>

■ 시행규칙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